

당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고객께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거 분양 계약 및 전매시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셔야 함을 고지합니다.

- 아 래 -
인지세법

(시행 2020. 8. 28) [법률 제16568호, 2019. 8. 27. 타법개정]

제1조(납세의무)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,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제3조(과세문서 및 세액)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이하 "과세문서"라 한다)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.
(개정 2014.1.1, 2017.12.30, 2018.12.31, 2019.8.27, 2020.3.31)

과세문서	세액
1. 부동산, 선박,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	기재금액 1천만원~3천만원 이하 : 2만원
	기재금액 3천만원~5천만원 이하 : 4만원
	기재금액 5천만원~1억원 이하 : 7만원
	기재금액 1억원 ~10억원 이하 : 15만원
	기재금액 10억원을 초과 : 35만원

제8조(납부)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.

※ 종이문서용 수입인지 발급방법

- 우체국 및 은행 창구 (신분증 지참 창구 발행)**
 - 우체국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86번길 17(야탑역1번출구에서 198m) 09:00~18:00 발급가능
 - 은행 : 야탑역 인근 하나은행, 국민은행 등 1금융권 09:00~15:30 발급가능
- 전자수입인지 www.e-revenuestamp.or.kr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 "전자수입인지" 검색**
 -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
 - 로그인 후 구매 (회원가입 또는 비회원도 이용가능하나 구매 위한 yesign공동인증서 필요)
 - 납부정보 입력 : 용도-인지세 납부/과세문서 종류(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/ 금액 : 150,000원 기재)
 - 결제방법 :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선택 결제(최대 20매까지 결제 가능)
 - 출력 :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미리 확인바람(재발행 불가)
-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원본첨부 또는 프린트 출력해서 원본첨부(사본으로 보관)**

※ 인지세 가산세 기준(2021.01.01.부터 적용 :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)

기간	1일 ~ 3개월	3~6개월	6개월 이후
가산세	무(과소)납부세액의 100%	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	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계약당일 수입인지(인지세)를 납부하지 않을 시 익일부터 많은 가산세가 징구되오니 착오없이 수입인지를 구입,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